

제323회 임시회  
2013. 9. 11.(수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(수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임 현 의원 외 6인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9월 4일

-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 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체육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 (안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금번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##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 행	개   정   안
<p>&lt;신   설&gt;</p>	<p><u>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u></p> <p>① <u>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.</u></p>
<p><u>제6조 ~ 제12조 (생   략)</u></p>	<p><u>제7조 ~ 제13조 (각각 현행 제6조 ~ 제12조와 같음)</u></p>
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42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 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-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